

# 2023년 제12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원당동 1067번지(검단신도시 C2-1-5블럭),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서구		심의일자	2023. 12. 26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     광정근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			
	지    번	1067번지	관련지번	-	
	대지면적	1,574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	일반상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091.92㎡	건폐율	69.3722%	층수 지하 2층 / 지상 9층
	주 용 도	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동
	최고높이	38.3m	용적률	499.59%	연면적 합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0,618.31㎡

구 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 1층, 지하 2층 차로너비 6m 미만 부분 주차 삭제할 것</li> <li>○ 지하 2층 회차공간을 주차로 변경하고 마지막 주차 부분을 회차 공간으로 변경할 것</li> <li>○ 주차공간 확보요(통로: 서구청), 허가시 면적조정가능 검토요</li> <li>○ (P13) 의료시설로 변경시 지상 6층 수공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(하부층 다른 분양자 사용). 추후 문제이긴 하나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 필요</li> <li>○ (P16) 발전기실 장비반입에 간섭이 되는 MCC판넬 위치 조정 요함(유사시 유지관리 등을 고려)</li> <li>○ (P17) 저수조 상단이 경사로임에 따라 저수조 최소높이 1.8m 보하단 1m 유효높이 부족</li> <li>○ (P17) 저수조 상단이 제연휨룸인 곳은 층고가 낮아 점검 불가 (보하단까지 담수됨)*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[별표3의2]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 필요</li> <li>○ 저수조의 소화수조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필요</li> <li>○ 지하저수조 단면 참조(용량재산정-EV.PIT 점검)</li> <li>○ 저수조관련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조치요</li> <li>○ (P19) 비상용 승강기는 제연휨룸 이동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지하 2층까지 설치를 권고</li> <li>○ 비상용 EV는 지하 2층까지 내려 설치</li> <li>○ (P20) D.A바닥면적(일반적으로 그릴면적의 2배임) 및 급·배기 그릴간 이격거리 검토 필요</li> <li>○ 옥탑 연료전지실은 옥탑구성상 부적합 한 것으로 사료됨</li> <li>○ 발전기실, 기계실 간 급·배기 혼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</li> </ul>
(구 조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풍하중계획 관련 내용 구조계획서에 반영할 것</li> <li>○ BH2, 3 위치에서 평판재하시험 실시할 것</li> <li>○ 구조계산서 상 구조도면 수정할 것</li> </ul>
(기 타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 반영바람

심의결과	<p>[ ] 원안 의결    [○] 조건부 의결    [ ] 재검토 의결    [ 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 <li>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 <li>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 <li>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</li> </ul>
------	--